

◆ 政府 施策 ◆

「21세기를 향한 중전기기산업의 발전전략」공청회 개최

- 통상산업부는 4.28(금) 한국전력공사 회의장(강남구 삼성동)에서 중전기기 제조업체, 학계, 단체 임직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연구소, 전기진흥회, 전기조합, 기초전력공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21세기에 대처할 중전기기 발전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 이번 공청회는 WTO체제 출범에 능동 대처하고 21세기에 중전기기를 세계 일류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 중전기기 「산업구조의 선진화」방안으로

- 규모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13개 단체수위계약품목을 '96년 4개 품목, '97년 4개 품목, '98년에 나머지 5개 품목을 해제
- 수입선다변화품목 총 11개는 '96년 3종, '97년 4종, '98년 4종을 해제하는등 '98년 이후부터는 완전한 자율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
- 한편 부가가치가 높고 국제경쟁이 가능한 “차단기, 제어반, 전력용반도체”등 첨단제품 12개는 수출전략 품목으로 지정 공업발전기금 등을 집중 지원

◆ 『기술수준의 일류화』를 위하여는

-중소형 단기, 단품위주의 과제에서 전략적 원천, 범용 중심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 발전프랜트, 초고압 송변전설비 및 전력용 반도체를 활용한 배전반, 제어반 등을 중점 육성

-내수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전기기 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중전기기 제품 표준화사업」을 추진

-선진국의 60%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조기에 선진국(G-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변압기, 전력용반도체 등 3개분야 243개 과제를 집중 개발대상과제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에

3,15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시설확충등 기술인프라 구축에 1,800억원 등 총 4,950억원을 투자(민간

2,000억원, 공공기관 1,000억원, 정부 1,950억원)하되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 국내 기술축적이 취약한 “대전력제어용 반도체등 7개 과제”는 국제공동연구로 개발하며

·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저온 초전도선재등 127개 과제”는 국책연구소 및 공공 기관이 담당
토록 하며

· 조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지능형 변환장치등 109개 과제”는 기업체에서 개발하여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수출산업화』 방안으로는

-소형전동기, 주상변압기등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

· 생산공정의 자동화, 부품의 국산화, 중소부품업체간 계열화 및 업체 상호간의 표준화 등을 통
하여 단위생산을 높이고

- 정기적인 해외시장조사와 해외 기술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기금(EDCF)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극대화해 나가며,
-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등 동남아시아에 해외 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감.
- 수입금액이 큰 부품과 대일의존도가 높은 절연지등 변압기부품, 인버터, 애자등 12개 부품은 구매시제를 도입하고 공업발전기금 등을 지원 국산 개발토록 유도하고 국산개발된 제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개발의욕을 높여나감.

◆ 「세계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 세계의 일류기업과 대등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품질인증제도인 ISO 9000시리즈를 전 중전업체가 획득하도록 유도하며 원가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100PPM 운동을 전개하고
- 국내 시험성적을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시험검사기관제도(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제도를 활성화해 나감.
- 이같은 발전전략의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국내 중전기 산업의 생산량을 '94년 57억불에서 2000년초 200억불로 증가될 것이며 무역적자국에서 무역흑자로 전환하는 한편 세계 8위국의 중전기 산업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편, 통상산업부에서는 이번의 연구 및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중 2000년대 중전기 산업을 이끌어갈 중·장기 중전기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工業發展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원범위 대폭 확대 -

통상산업부는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업발전법의 적용 범위에 환경설비제조 관련업, 기계장비 임대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시장조사업, 경영상담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광고물작성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상품 전시 및 행사대행업), 영상산업, 특정폐기물처리 및 폐수처리업 등 6개업종을 추가했다.

공업발전법상 적용 대상업종에는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등 기술개발자금의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한 필요기술의 확보에만 주력해 개발기술의 실용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감안, 실용화 지원 전문기관 지정과 실용화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화했다.

이밖에 공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륜·경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수익금의 17.5%)을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시 산업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기금운용심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했다.

통산부는 입법예고 중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잠정 확정, 5월 중순 경제 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공업발전법 시행령 · 개정안 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 범위(적용 대상업종)	○제조업 -설탕제조업 등 9개 업종(중분류기준) * 업종을 규정함에 있어서 개별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	○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23개 업종(중분류기준) * 제조업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이 경우 음식료품 제조업, 인쇄출판업 등이 추가됨) * 업종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91.9 개정된 새로운 표준산업 분류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임

구 분	현 행	개 정
	○전기·가스·중기업, 수도사업(석유화학 단지관련)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공업기반기술향상관련) <추 가> * 총 12개업종(중분류 기준, 86.2 표준산업분류기준)	○ 전기·가스·중기업, 수도사업(석유화학 단지관련)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공업기반기술향상 관련) ○환경설비제조관련업 ○기계장비임대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광고물 작성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상품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특정 폐기물 수집 처리업 및 폐수 처리업 ○영상산업 * 총 33개업종(중분류 기준, 91.9 표준산업분류기준)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	<신 설>	○ 개발업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 지정 ○ 특정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정보, 시설, 자금 등을 지원 ○ 신기술제품 인증제도 등을 통해 시장수요의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요청
공업발전 기금의 수입금 확대	○정부출연금, 타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차입금 등	○경륜, 경쟁사업 수익금을 출연(수익금의 17.5%) 받기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수익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또는 출연금」을 추가
공업발전기금운용 계획의 심의절차 정비	○산업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와 통일시킴

工事입찰제도 대폭 변경

－ 전기·통신·건설등 公共 工事 －

오는 7월 6일부터 전기및 통신·건설등 公共공사부문의 낙찰자 선정방법이 공사비 55억원 기준으로 미만일 때는 특수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또한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계약보증금이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률 시행령(안)은 정부의 국내 건설시장 개방규모인 공사비 55억원 미만은 현행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한 특수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수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의 85%위로 입찰한자중 최저가순으로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에 해당하는 입찰자격위로 가장 낮게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일정수란 재경원장관이 계약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정수를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예를들면 적정수를 30%로 가정한다면 1백명일 경우 85%이상 입찰한자중 31번째가 낙찰자가 된다.

이같은 특수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만약에 예정가격이 누설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5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계약이행 능력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실시된다. 또 시행령(안)은 덤핑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현행 계약금액의 10~20%인 계약보증금을 30~50%로 대폭 강화했다.

또 시행령(안)은 시중노임의 15%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가감없이 1백% 적용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요인 발생을 제거했다.

이밖에 시행령(안)은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내역입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억원이상에서 55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턴키입찰이 활성화 되도록 기본설계 입찰에서 탈락된 우수설계자(3명이내)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유망선진기술 기업육성 방안 개정 ◆

통상산업부는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유관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일류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993년 10월 7일(상공부공고 제1993-80호) 공고한 유망선진기술기업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46호, '95. 4. 18) 했다.

1. 목적

-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일류 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
- 시행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2. 기본방향

- 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발굴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주력함.
- 나. 대상분야별로 기술력향상을 위한 의지가 투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술지도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함.
- 다.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정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정된 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집중지원함.
- 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자주적인 기술개발노력을 우선 지원함.

3. 유망선진기술기업의 지정

가. 지정 대상업체

- (1) 유망중소기업중 직전 2개년간 평균매출액의 2%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업체
- (2) 지방중소기업중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업체로서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업체

나. 지정대상 제외업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유망선진기술기업체 지정에서 제외함】

-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51%이상 외국인 투자업체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업체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 유망선진기술기업 평가표에 의한 평점 합계가 50점 미만인 업체

다. 지정대상업체 및 분야

-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대상 업종 및 분야는 제조업 관련업종 및 분야에 한함.

라. 지정절차

- (1) 통상산업부장관은 『유망선진기술기업체 육성방안』을 공고함.
- (2) 유망선진기술기업체로 지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또는 『유망선진기술기업의 추천기관』을 통하여 『유망선진기술기업의 발굴기관』에 종합기술지도를 신청
- (3) 각 발굴기관은 관계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현장실태조사 및 정밀진단』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대상업체 및 분야별 지도과제를 확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
- (4)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지도대상업체를 『유망중소기업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공고하고 이들 명단을 각 지원 유관기관에 통보함.
- (5) 『유망선진기술기업의 발굴기관』은 정부출연기관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도일수·분야를 결정

4. 유망선진기술기업의 졸업

가. 졸업대상

-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후 일정기간 지원한 업체 및 기업규모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업체

나. 졸업기준

-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후 3년간 지원한 업체
- 지정후 1년이상 지원한 업체로서 일정규모 이상 성장한 업체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
 - 추가 『지도과제』를 발굴하지 못한 업체
 - 발굴기관이 판단하여 『선진기술』이 축적된 업체

다. 졸업유예업체

- 일정기간 지원하여 졸업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중 지원기간내에 기술개발, 품질고급화등지원에 따른 성과가 상당한업체로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유망선진기술기업』은 1년의 기간내에 졸업을 유예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범위 초과업체, 지원성과가 미약한 업체, 자력성장기반 확립업체는 유예대상에서 제외
 - 졸업유예제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

라. 졸업시기

- 지원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한 업체 및 자력성장기반 구축업체 : 분기말

5. 유망선진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가. 기술력 향상지원(자체 지원)

- (1) 현지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 각 발굴기관별 실시
 - 전문가 구성 : 발굴기관 직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
 - 분야별 지원과제 도출

기술개발분야, 기술지도분야, 시설개선분야, 정보제공분야, 경영지원분야

(2) 종합기술지도

간사기관	지도과제	유관기관
공업진흥청	품질경영시험·계량·측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생산애로 기술	○ 대학(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애로기술, 정보화, 자동화, 경영관리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기술연구원	연구개발, 생산기반기술, 자동화	○ 금융기관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기타 지도기관
○ 해외 초청 및 파견 기술지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되 KOTRA 조직망 활용 -내국인 기술지도 인력이 부족한 첨단분야 -『유망선진기술기업』이 희망하는 분야		

나. 연계지원

○ 발굴기관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타지원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망중소기업 전담반』에 연계지원 요청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가능한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결과를 『지원요청기관』 및 『유망중소기업전담반』에 보고

·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불가사유』를 통보

지원기관	주요지원내용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 우대금리 지원, 경영·기술지도 지원 ○ 중소기업자동화자금 지원,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 KS표시 허가등 각종 인·허가세 우대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지방중소기업시책자료 제공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기술지원계획에 관한 자료제공, 종합적인 기술지원
대한무역진흥공사	○ 수출 기업화 사업 지원
한국무역협회	○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우대지원
생산기술연구원	○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선진기술지도
산업기술정보원	○ 기술, 특히, 시장정보지원, 타당성 조사 지원등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술지원,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한국표준협회	○ 품질경영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종합상사(8개사)	○ 대기업의 물품구매 정보제공,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50호, '95. 4. 20) 했다.

1. 제정취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4,898호, 1995. 1. 5) 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고유업종 및 동업종의 해제시기를 규정함.

나. 중소기업자와 대기업자간 사업분쟁발생시 사업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의 구성(위원장·통상산업부차관, 위원·10인 이내) 및 회의개최·의결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신청의 경우 중소기업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등 사업조정절차를 규정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사업조정을 권고 또는 명령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함.

라. 수·위탁기업체간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사무국을 둠.

마. 위·수탁기업체등의 분쟁조정 요청은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통상산업부장관에 조정요청을 하도록 함.

바. 수탁기업체에 대한 위탁기업체의 납품대금지급에 있어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은 현금지급시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로 하고, 어음지급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할증율을 위탁기업체가 부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5월 10일까지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참조: 중소기업정책과장, 전화 503-9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예고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5-49호, '95. 4. 20) 했다.

1. 제정취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4,825호, 1995. 1. 5)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단체수계약시 중소기업조합원에 대한 균등한 구매수혜를 위하여 불공정 운영조합을 관리대상조합으로 선정하여 3개월이상 중점관리하고 당해조합의 소관물품을구매 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수·발주기업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기업간 거래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시설을 조성·설치 또는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등 물류현대화 사업의 범위 및 자금, 지도·연수, 정보제공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라. 국외판로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수출보육사업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규정함.

마.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해방지시설 및 공정으로의 대체, 관련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자원재활용 설비의 도입등에 필요한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등 자동화지원센터의 세부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은행의 운영등 정보화지원센터의 세부사업내용을 규정함.

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물류현대화, 중소기업협동화, 중소기업단지조성 및 창업보육사업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5월 10일까지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참조: 중소기업정책과장, 전화 5003-9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5-48호, '95. 4. 20)했다.

1. 개정취지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문개정(법률 제4,897호, 1995. 1. 5)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외의 자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함.

나. 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소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중기업자는 중소기업자중 소기업자를 제외한 자로 함.

다.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종별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5월 10일까지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참조: 중소기업정책과장, 전화 503-9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 입안예고 ◆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기술기준 등에 관련된 규칙안 입안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업진흥청 공고 제1995-478호, '95. 4. 19) 했다.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과 작동기능에 대한 표시를 기술발전에 맞추어 알기쉽고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용품 대상품목에 추가 및 삭제에 따른 표시사항의 조정
- 나. 안전성과 무관한 표시사항의 삭제
- 다. 제품작동기능 한글표기방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5년 5월 8일까지 의견서를 공업진흥청(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기용품 안전과 503-7927)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특정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확정 - 과기처, 先導기술등 4천5백75억 투입 -

政府는 올해 특정연구 개발사업에 총 4천5백75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오는 5월부터 세부사업별로 연구참여 희망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각 부처관계관과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5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최종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과기처 2천억원을 포함해 통산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韓電·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의 출연금 등 총 4천 5백 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약·신농약, 차세대반도체 등 기존에 추진해온 10개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 2천 5백 53억원 △생명공학기술개발(바이오텍 2000)과 핵심소프트웨어 기술개발(스텝 2000)등 국책연구개발사업에 8백 4억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연구에 4백40억원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6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신규 추진사업으로 △현재 汎부처적으로 발굴중에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1백1억원 △핵심엔지니어링 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엔高에 대비한 기계류 핵심 기술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안전성제고와 관련된 기술개발·방재기술 등이 연구기획사업을 거쳐 집중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제도를 크게 확대, 능력과 실적에 따라 연구개발 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중간진입전략을 강화하고 總研究原價개념과 연구책임자 중심체제가 핵심이 되는 프로젝트베이스 관리체제를 도입, 적용키로 했다.

外國人力 추가도입 需要 조사 — 통산부, 研修업체 자격도 일부 완화 —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조업체의 외국인력 추가도입 문제와 관련, 이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필요인력에 대한 실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통산부·재정경제원·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가능한 조기에 도입키로 최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실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수요 조사는 4월27일부터 5월 17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될 예정인데 외국인력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 업체는 이 기간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이번 추가도입 인력부터 연수업체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는데 종전에는 공장등록증 보유업체중 사업개시 3년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을 주던 것을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업체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연수업종과 연수생 배정률은 종전과 같은 21개 업종중 상시 생산직 근로자의 10% 범위내에서 조사된다.

또 연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연수생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행정지도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신청요건에 명문화해 적정한 연수환경조건 및 준수사항들을 수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줄 계획이다.